양산시 공고 제2023-1644호

2023년『 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 공고

양산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2023년 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대상 청년 여러분께서는 공고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일

양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23. 2월 ~ 11월(10개월) *2월분 납부한 임차료부터 지급

○ **신청기간** : 2023. 6. 12.(월) ~ 6. 23.(금), 18:00까지

○ **지원대상** :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생애 1회

※ 생애 1회 지원(2022년 양산시 청년월세 및 청년월세 한시사업 지원자 제외)

※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원칙) 아래의 모든 요건(①~④)을 충족하는 자
- (추가) ④요건은 충족하지 않지만, 아래의 ①~③, ⑤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산시이고 만19~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 ~ 2004년(1983.1.1. ~ 2004.12.31. 신청 가능)

②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 양산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세대주여야하나, 세대원(반드시 청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대원(청년) 명의로 신청 가능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동일세대 1명 지원)

【 2023년 기준중위소득 60% 기준표 】

(단위 : 원/월)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 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2,661,000	95,181	26,610	95,710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제외
4인	3,241,000	115,665	55,694	116,821	
5인	3,799,000	135,693	89,972	137,254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표 】

(단위 : 원/월)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 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117,000	111,677	50,654	112,823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제외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확인

※ 건강보험료 자격변동자는 가장 최근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 중위소득 산정 :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의 보험료를 합산(보건복지부)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가구원 수는 제출한'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⑤ 청년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지만 1)'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수혜대상 자가진단(모의계산) 결과 지원요건(거주, 소득, 재산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경남도 자체사업 신청을 원하는 자 또는 2) '21년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을 받은 경우도 신청 가능

※ '22년 사업부터 생애 1회 지원규정 적용 → '22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경우 '23년 사업은 신청 불가(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국토부 주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불가)

○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①~⑧)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①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②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⑥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양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2022년 양산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청년 주거지원 사업

⑦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⑧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우리 시의 기준을 따릅니다.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3. 6. 12.(월) ~ 6. 23.(금)**

○ **신청방법**

- 온 라 인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청년업무담당 방문접수 (09:00~18:00, 평일 근무시간 내)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 **신청서류 :** 양산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 → 시정정보 → 알림마당 →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 경남바로서비스란, 경상남도 및 시·군에서 개인에게 제공하는 지원서비스 신청 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서비스임

** (신청방법) PC, 모바일로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접속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서식1】) 1부.
- 신청서(앞면) 신청자 유의사항(뒷면) 모두 작성.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2】)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주거지원 사업 참여여부 확인용) 1부.
- 대출정보를 제외한 카드정보나 채무보증정보는 지우거나 가려서 제출,
- 대출금액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제출, 대출현황 없는 경우 없음으로 발급

※ 발급 : 크레딧포유(http://www.credit4u.or.kr)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및 임대료 이체확인증(최근 3개월) 1부.
- 사업기간 중 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서도 제출
- 이체확인증은 최근 3개월 납부분 제출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자격확인서 각 1부.
- 신청인이 직장 피부양자 또는 지역 세대원일 경우 :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각 1부(부모 모두) 제출
- 신청인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기혼인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각 1부

- 아르바이트, 임시근로 등 청년 소득이 월 100만원 이하인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 직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라 하더라도 신청인(배우자 포함) 및 부모의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각 1부,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각 1부(부모 모두) 제출
  ※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⑥ **주민등록등본(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발급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13자리), 관계, 전입일 포함)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 제외 후 발급)
- 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 발급
  ※ 발급 : 정부24(https://www.gov.kr), 읍면동행정복지센터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신청자 기준)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읍면동행정복지센터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자 확인용, 등본 상 가구원 모두 제출) 1부.**

- 과세연도: 2022~2023년,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 미과세 증명서 발급
- 세목: 재산세와 자동차세 포함
- 세대주, 세대원 모두 제출
  ※ 발급 : 정부24(https://www.gov.kr), 읍면동행정복지센터

⑨ **위임장(대리인이 접수 시)(【서식3】) 1부.**

- 가족(부모, 형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
-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발급)

○ **결과발표 : 선정자 SMS통보 (2023. 8월 중)**

○ **문 의 처 : 양산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 ☎055-392-3025**

4. 추진일정

신청·접수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SMS 통보)		월세 지원		사후관리
읍면동/온라인	▷	양산시	▷	양산시	▷	양산시	▷	양산시, 경남도
6. 12.(월) ~ 6. 23.(금)		6 ~ 7월		8월 한		8월 ~ 12월 (지급기간)		8월 ~ 12월 (관리기간)

5. 유의사항

○ 본 공고대상인 「2023년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 과 2022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므로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 후 대상이 되는 청년 가구는 국비지원사업을 우선 신청하시기 바라며, 중복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모의계산 서비스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 '22년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부터 생애 1회로 제한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보완 통보 및 지원 제외대상자 통보 후 5일 이내 증빙하지 않으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됩니다.

○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 매월 5일까지 월세 계좌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지급신청서(서식4)를 제출
- ▸ 지원중지 사유 발생 시 '참여 중지 신청서'(서식5)를 제출
- ▸ 사업선정 후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제출

○ 대상자 선정 이후 제외사유 발생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양산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에 공고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양산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055-392-3025) 월세지원 업무 담당자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년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제출서류 목록

「2023년 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자 제출서류 목록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서식1】) 1부.** ※ 신청서(앞면) 신청자 유의사항(뒷면) 모두 작성.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2】)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주거지원 사업 참여여부 확인용) 1부.**
- 대출정보를 제외한 카드정보나 채무보증정보는 지우거나 가려서 제출,
- 대출금액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제출, 대출현황 없는 경우 없음으로 발급

※ 발급 : 크레딧포유(http://www.credit4u.or.kr)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및 임대료 이체확인증(최근 3개월) 1부.**
- 사업기간 중 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서도 제출
- 이체확인증은 최근 3개월 납부분 제출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자격확인서 각 1부.**
- 신청인이 직장 피부양자 또는 지역 세대원일 경우 :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각 1부(부모 모두) 제출
- 신청인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기혼인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각 1부
- 아르바이트, 임시근로 등 청년 소득이 월 100만원 이하인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 직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라 하더라도 신청인(배우자 포함) 및 부모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각 1부(부모 모두) 제출

※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 10쪽 서류 확인표 참조

⑥ **주민등록등본(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발급(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13자리), 관계, 전입일 포함)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 제외 후 발급)
- 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 발급

※ 발급 : 정부24(https://www.gov.kr), 읍면동행정복지센터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신청자 기준)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읍면동행정복지센터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자 확인용, 등본 상 가구원 모두 제출) 1부.**
- 과세연도: 2022~2023년,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 미과세 증명서 발급
- 세목: 재산세와 자동차세 포함
- 세대주, 세대원 모두 제출

※ 발급 : 정부24(https://www.gov.kr), 읍면동행정복지센터

⑨ **위임장(대리인이 접수 시)(【서식3】) 1부.**
- 가족(부모, 형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
-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발급)

소득 및 혼인여부에 따른 건강보험 제출 서류 확인

※ 소득기준 판단은 건강보험료 가입 상태로 판단

* 소득이 있는 청년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 소득이 없는 청년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피부양자, 지역세대원

구분	소득이 있는 미혼 청년 (직장인, 자영업 등)	소득이 없는 미혼 청년 1 (학생, 무직자 등) 부모님 모두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이 없는 미혼 청년 2 (학생, 무직자 등) 부모 중 한쪽만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기혼인 청년 1 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	기혼인 청년 2 한쪽만 소득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신청인(청년)의 보험료	부양자(부모 등)의 보험료		신청인(청년) + 배우자의 보험료 합산	신청인(청년) 또는 배우자의 보험료 (소득있는 자)
소득조회 가구원수 산정	1인	신청인(청년) + 부양자(부모 등) + 형제자매(소득이 없는 미혼 형제자매,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		신청인(청년) + 배우자 + 자녀	
제출 서류	1.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2. 본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2023.5월분) 3. 본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총 3부)	1.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2.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2023.5월분) 3. 부모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1부. (형제자매 없는 경우 제출 필요없음) (총 5부)	1.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2. 부양자(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2023.5월분) 3. 부양자(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총 3부) *2,3번 서류는 소득있는 자(부양자) 기준	1.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각1부. 2.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2023.5월분) 3.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1부. (총 6부)	1.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각1부. 2. 부양자(본인 또는 배우자)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2023.5월분) 3. 부양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총 4부) *2,3번 서류는 소득있는 자(부양자) 기준

* 소득이 있는 미혼 청년의 경우 본인 아래로 피부양자가 있어도 본인만 판단

** 청년 소득이 월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직장(지역)가입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시 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인정(아르바이트, 임시근로는 소득 미인정)

*** 표 이외의 경우 FAQ 참고, 그 이외 사항은 전화 문의

【서식 1】

(앞면)

2023년『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연 락 처 (휴대전화번호)
	직 업	☐ 학생 ☐ 무직(취업준비생 등) ☐ 직장인 ☐ 자영업 ☐ 기타( )					전자우편
	주민등록상 주소						

가족사항	세대주와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연 락 처 (휴대전화번호)

임대차계약사항	전세금 및 월 임대료	**보 증 금** 금 _____원 **임 대 료** 매월 금 _____원(계약서상 기재된 금액과 실제납부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납 부 일** 매월 _____일 **임대료 납입방법** ☐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 ☐ 기타( ) **※ 신청인과 계약자는 동일하여야 함**
	부동산 소재지	양산시
	임대인과의 관계	☐ 제3자 ☐ 부모·형제·자매·(외)조부모 ☐ 기타(관계 :)
	계약기간	20 . . . ~ 20 . . . (개월)
	주거형태	☐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다가구 ☐ 기타( )

재산정보 제공동의자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 동의 필요)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	
			-	
			-	

지원금 입금계좌	계좌번호 : (예금주:)/ (금융기관:)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작성 (적금, 펀드, 휴면, 압류방지 계좌 불가)
소득 및 재산현황 (가구원 전체)	소득 및 일반재산(주택,토지,건물,조합원입주권,회원권,자동차 등) 공적자료로 반영함을 알려드리며 공적자료와 상이할 경우 추후 이의신청을 통하여 본인 증명서류 제출을 통해 적합 여부 판단하여 반영 가능
중복지원 불가사업	아래의 사업대상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중복수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주택 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 주택 임차,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국가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본인(대리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

(뒷면)

< 신 청 자 유 의 사 항 >

1. 양산시「청년 월세 지원사업」참여자는 청년주거정책 등 다음과 같은 유사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등을 공급받은 자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 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을 받은 자

2. 지원 중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주택 구매 등 월세 지원의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 연속 2회 이상 월세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월세 지원의 취소 및 환수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주거정책 사업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신청인은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신청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 중단은 물론 지원금 반환 및 향후 양산시 청년주거정책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기재사항의 허위.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신청인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자 선정 및 확인 조사(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수집·이용 및 관련 정책 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동의일로부터 5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 ㅇ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 ㅇ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ㅇ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신청자의 요건 확인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ㅇ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 ㅇ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ㅇ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 동 의 □ 미 동 의	□ 동 의 □ 미 동 의	□ 동 의 □ 미 동 의	
		□ 동 의 □ 미 동 의	□ 동 의 □ 미 동 의	□ 동 의 □ 미 동 의	
		□ 동 의 □ 미 동 의	□ 동 의 □ 미 동 의	□ 동 의 □ 미 동 의	
		□ 동 의 □ 미 동 의	□ 동 의 □ 미 동 의	□ 동 의 □ 미 동 의	
		□ 동 의 □ 미 동 의	□ 동 의 □ 미 동 의	□ 동 의 □ 미 동 의	

※ 학생, 무직자(취업준비생 등) 등은 소득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부모(부양자)의 동의가 필요함.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

【서식 3】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받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2023년 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①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②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발급)

2023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

【서식 4】 <지원대상자 선정 시>

「2023년 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임차료 지급 신청서
(2023.　월분)

■ 납부자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 남　☐ 여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납 부 자 (송금한 자)	☐ 본인　☐ 부　☐ 모　☐ 기타(납부자와의 관계 :　)		

※ 사업선정 후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서 제출

■ 임차료 납부내역

납 부 일 (이체일자)	2023.　.　.
총납부금액	원
받는 사람 (임 대 인)	성명 :　　계좌번호 :　　(은행명)
납 부 방 법	☐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　☐ 기타(　　)

■ 입금 받을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입금요청 금액
			원

2023년　월　일

위와 같이 「2023년 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임차료 지급을 신청합니다.

성　명 :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

붙임 : 입금내역 증빙서류(계좌 변경 시 통장사본 제출) 1부.

【서식 5】 <지원대상자 선정 후 참여 중지 필요 시>

『2023년 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 중지 신청서

■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핸드폰)

■ 사업참여 중지사유(해당사항에 ○ 체크하세요)

○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　　)
○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　　)
○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지원기준이 아닐 경우　(　　)
○ 연속하여 2회 이상 임차료를 미납한 경우　(　　)
○ 기　타
(사 유 :　　)

2023년　월　일

위와 같이 「2023년 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 참여 중지를 신청합니다.

성　명 :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

※ 기재사항의 허위·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6】 <지원대상자 선정 후 지원자격여부 확인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양산시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양산시 청년 월세지원사업 (지원자격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3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지역/직장가입자)	4	건강보험 자격/자격득실 확인서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